

코로나 학번 대학 졸업(예정)자 대상 훈련비 지원 확대

❖ '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·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일명 코로나학번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수강 시 자부담률을 완화합니다.

- (대상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의 ①'21년 졸업자 및 ②'22년 졸업예정자(단, 대학원 제외)
- (내용) '코로나19' 영향으로 취업역량 함양이 부족했던 코로나 학번 졸업생(예정자)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훈련비 자부담 완화
 -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%p를 일괄 경감하고,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% 이상은 자부담 면제

< 직종별 평균 취업률에 따른 자부담률(%)>

현행						코로나 학번 적용						
구분	직종평균 취업률					직종평균 취업률						
	~ 70%	60~ 70%	50~ 60%	40~ 50%	40% ~	~ 70%	60~ 70%	50~ 60%	40~ 50%	40% ~		
대상	근로장려금	7.5	12.5	17.5	22.5	27.5	⇒	전액	5	10	15	20
	일반훈련생	15	25	35	45	55		전액	10	20	30	40
	국취 II유형 등			30	40	50				15	25	35
	국취 I유형 등	전액				20		전액				20

* 취업률 70%이상 NCS 직종(3개): 법무, 간호·임상지원(간호조무사)

- (적용기간) '22.1.1.~12.31. 기간 내 시작하는 훈련과정 수강 시
- (신청방법) 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 졸업(예정)자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 제출
 - ('21년 졸업자)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- ('22년 졸업예정자) 졸업예정증명서,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